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4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 우재준 • 윤영석 • 이상휘

서천호・구자근・김승수

김위상 · 정희용 · 강대식

김석기 • 이인선 • 김기웅

주호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 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법률 제 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전단 중 "도청"을 각각 "도청·도교육청"으로, "도의청사 및 부지"를 "도의 청사 및 부지(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 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교육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	제31조의2(종전 도의 청사 및 부		
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지방	지의 국가 매입 등) ①		
자치법」(법률 제478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직할시의 설치(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를 포함			
한다)로 <u>도청</u> 소재지와 관할	<u>도청 • 도교육청</u>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u>도</u>			
<u>청</u> 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u>도청 • 도교육청</u>		
경우 종전 <u>도의 청사 및 부지</u>			
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도의 청사 및 부지(도교육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	청의 청사 및 부지를 포함한다.		
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		
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